



소 방 청



수신 경기도지사(재난예방과장)

(경유)

제목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적용기준 회신(경기도소방재난본부)

1.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-20825(2021.11.30.)호 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적용기준 질의」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.

가. 질의요지

- 기존 건축물에 이미 설치된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시 성능시험 기준미만으로 측정되나,
- 화재안전기준 개정(2021.4.1)으로 완화된 펌프 토출량 이상을 충족한 경우 해당 펌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

나. 경기도 의견

- 갑설 : 성능시험 시 완화된 펌프 토출량 이상 측정된다면 계속 사용 가능
- 을설 : 설치된 펌프의 명판값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성능시험 기준 미달인 경우 사용 불가

다. 검토 결과

- "을설"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- 화재안전기준 개정 내용은 수원의 산정 및 펌프의 토출량의 기준이 하향(완화)된 것으로, 하향된 기준은 성능시험시 요구되는 펌프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수원 및 펌프 토출량의 기준이 하향된 것과는 별개로 '펌프의 성능시험'※은 이미 설치된 펌프(설치 당시 필요 토출량 및 방수압력, 배관 구경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)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두 기준은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.
※ 「NFSC 102」 제6조제8항, 「NFSC 103」 제8조제6항, 「NFSC 103A」 제8조제6항, 「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고시」 별지3, 별지4 펌프성능시험(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)
- 또한 펌프 토출량이 변화할 경우, 말단 소화전/SP헤드 방수압력, 배관의 구경, 마찰손실 등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, 헤드(노즐)의 방수압력, 방수량, 배관내 유속등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끝.

소 방 청 장



소방위 권태규 안전기준계장 이강민 소방분석제도 전결 2022. 1. 19.
과장 최재민

협조자

시행 소방분석제도과-295 (2022. 1. 19.) 접수 재난예방과-1282 (2022. 1. 20.)

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(나성동) / www.nfa.go.kr

전화번호 044-205-7551 팩스번호 044-205-7621 / ilizanove@korea.kr / 비공개

현장활동, 안전은 당신에게도 가장 우선입니다.